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6-18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3누128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	담당변호사 김○○
피고, 피항소인	○○시장
제 1 심 판 결	수원지방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구합70392 판결
변 론 종 결	2024. 1. 24.
판 결 선 고	2024. 2. 7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2021. 6. 28. 원고에게 한 취득세 731,415,300원(가산세 포함) 및 지방교육세 61,867,300원(가산세 포함)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6-18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

원고는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.

갑 제2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일부에 일시적으로 건축자재나 컨테이너 박스를 보관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약 60%(= 20,564㎡/33,816.2㎡)에 이르는 큰 부분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부지와는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점, 이 사건 쟁점토지에는 당초 공장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을 뿐 건축자재나 컨테이너 박스를 적치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던 점, 이 사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잡초가 자라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중 일부에 자재 등을 적치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점, 그밖에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앞서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6-18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○○

판사 박○○

판사 송○○